

「석면안전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지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학교석면안전관리인 교육 위탁기관』 지정계획 공고

1. 위탁기관 지정 개요

가. 목적

- 학교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대상 석면안전관리교육과정 운영

나. 위탁내용

- 학교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교육 운영(이론 및 실습 병행)

다. 신청자격

- 「석면안전관리법」 제2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인력 및 시설(장비)을 갖춘 기관

라. 지정기관 수

-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지정

2. 제출서류 및 방법

가. 제출서류

- 신청서(첨부 1서식 참조)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자격기준을 증명하는 자료
- 학교시설 및 구성원의 특성 등을 고려한 교육계획서

<필수 포함내용>

- * 학교 인사이동 시기(학기 초) 및 방학 등 교육수요가 많은 시기를 고려한 교육일정 수립
- * 학교 특성을 고려한 위해성평가방법 및 석면관리 방안, 석면 해체·제거 시 안전관리인의 역할 등 실무 위주 교육과정 편성
- * 강사의 질 담보 및 교육이수자 등의 의견수렴(분석)을 통한 교육과정 운영방법 등의 적절성
-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실시간 원격교육 개설 계획

나. 제출방법

-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우편으로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3. 심사개요

가. 심사기준 : 법정 인력 및 시설기준 충족여부와 학교 상황을 고려한 교육계획서의 충실성 등에 대해 심사

나. 심사내용 : 지정요건에 대한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

4. 공모일정

가. 신청서 제출 : '21. 4. 1.(목) ~ 15.(목)

나.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 : '21. 4. 16(금) ~ 4. 23(금)

다. 최종선정 및 지정 : '21. 4. 30.(금)

※ 최종 선정된 기관은 개별 통보 및 고시 예정이며, 공모 진행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5. 접수처 등

가. 주소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나. 연락처 : 사무관 김태환(☎ 044-203-6541), 주무관 윤지수(☎ 044-203-7117)

(첨부 1)

학교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지정 신청서

신청자	대표자	이름 :	
		주소 :	
	담당 (부서장)	부서명 :	전화 :
		직위 :	팩스 :
		성명 :	이메일 :

「학교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지정 신청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지정될 경우 제출한 교육계획서를 비롯해 관련법령, 교육부에서 정한 제반 사항을 준수하고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성실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신청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며, 만일 허위 사실이나 중대한 오류가 발견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교육부장관 귀하

(첨 부 2)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의 자격기준(석면안전관리법시행령 별표2)

1. 인력 기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석면안전관리교육 또는 교육기관 운영을 전담할 전문인력을 1명 이상 확보할 것

1) 보건, 환경보건, 환경공학, 산업위생, 산업안전, 폐기물, 예방의학 등 석면 안전·보건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또는 관련 분야 경력이 2년 이상인 학사학위 소지자

2) 5급 상당 공무원으로서 환경보건 분야 재직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나. 건축·산업위생·환경(대기) 분야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석면안전관리교육을 담당할 전문인력을 2명 이상 확보할 것

1) 관련 분야 기술사

2) 관련 분야 기사로서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관련 분야 산업기사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제3호·제5호·제6호·제7호(제2호, 제6호 및 제7호는 수업연한이 4년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학교 졸업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으로서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

2. 시설 및 장비 기준

가. 사무실 : 30제곱미터 이상

나. 강의실 : 연면적이 120제곱미터 이상(교육용 장비 및 프로그램, 의자, 탁자 등 교육용 비품을 갖추어야 한다)

비고: 가목과 나목의 시설은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다.